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8. 30.(목) / 총3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병석, 사무관 박군성, 주무관 김송이 • ☎ (044) 201-3544, 3545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연식 제한 등 타워크레인 안전강화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안, 국회 통과

- 20년으로 연식을 제한하되,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 등 -

□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등 안전 강화를 위한 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안이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

○ 작년에 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1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총 26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가 제기되었다.

○ 이에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부문과 현장안전 부문의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(17.11.26)하였으며,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및 정밀진단 실시,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도입하는 내용(건설기계관리법령)으로, 고용노동부는 설치·해체업 자격 신설 및 등록제 도입, 신호수 배치 의무화, 원청의 책임강화 등을 내용(산업안전보건법령)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첫째, 기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타워크레인 연식을 제한하되, 정밀진단을 받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

- 둘째, 타워크레인에 대한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토부에 두어 검사 부실 여부를 확인·점검 하도록 함
 - 셋째,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·수입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신설함(이하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)
- 작년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 시에 관련단체 간담회, 의견수렴,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지만, 개정 법률안 발의 이후에도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 및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.
- 특히, 지방의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연식제한 도입에 따른 정밀진단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여, 정부도 이에 대해 하위법령 마련 시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할 계획이다.
-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,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조종사 안전교육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군성 사무관(☎ 044-201-35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 타워크레인 안전강화

- 대통령령으로 타워크레인(20년)과 그 부품의 내구연한을 정하여 초과 사용을 금지하되,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함
-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·수입하려는 자는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, 非인증 부품은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
-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 배정,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두고 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, 평가

2 조종사 관리·감독 강화

- 건설기계 조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사 보수안전교육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
-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을 금지,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고용주 처벌

3 처벌기준 강화

-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벌칙 상향 조정*

* 100만원 이하 벌금 →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
-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처벌 조항 신설(1년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)